

등록번호	공간정보제도과-5546
등록일자	2020. 12. 30
결재일자	2020. 12. 30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시설사무관	공간정보제도과장	국토정보정책관
정은정	유승경	2020. 12. 30. 남영우
협조자	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종호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	주요 검토사항	
	정책 중요도	낮음
	민원·갈등 가능성	낮음
	기관간 이견가능성	낮음
	홍보대책 필요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낮음
	서민생활 관련성	낮음

◆ 「공간정보관리법」에서 수로조사업무를 제외하는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고('21.2.19. 시행) 하위법령 개정중

이에 따라 수로조사업무 삭제를 골자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

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(안)

□추진배경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에서 수로조사업무를 제외하는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의 분법*및 하위법령 개정 중으로

* 법률 제17007호, 2020. 2. 18. 제정, 2021. 1. 1. 시행

-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로조사업무를 제외하기위하여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

□주요내용

- 시행규칙 본문 및 별표·별지중 수로조사업무 전수 삭제

□향후계획

- 입법예고 기간단축 협의: ' 20. 12. 30.
-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: ' 21.12.31. ~ 1.15.
- 법제처심사 : ' 21. 1.25. ~ 1.29.
- 공포·시행 : ' 21. 2. 19.